

공익성 외면한 끼워 맞추기식 편집, 언론이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글.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변호사



며칠 전, 도시락을 시켰더니 반찬으로 명란젓이 담겨왔다. 명란젓은 충분히 먹음직스러웠지만 차마 젓가락이 가지 않았다. 바로 방사능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산물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을 걱

SNS를 통해 '세계 5대 과학지인 PNAS(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서 발표한 일본 방사능 지도'로 알려졌으나 PNAS에서는 옆의 지도는 PNAS에서 발간한 지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하고 있다. SNS에서는 ‘일본 국토의 절반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됐다’느니 ‘수입 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산’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불신이 루머를 낳고, 루머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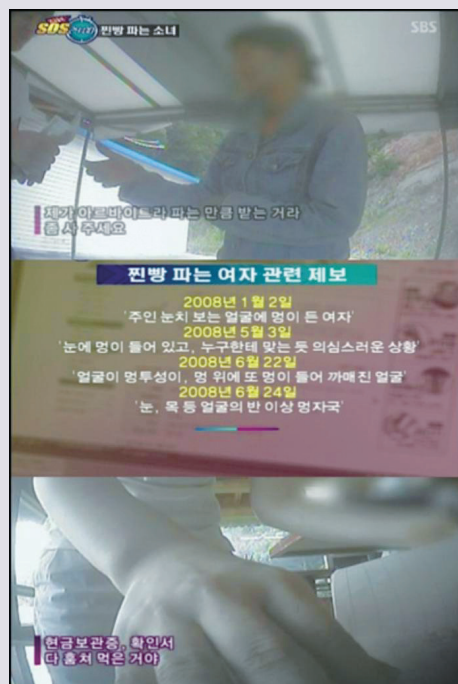
언론보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가끔 문제되는 몇몇 기사를 빼고 언론은 대체로 진실을 전하거나 적어도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믿음은 정말 중요하다. 언론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온갖 억측과 루머가 횡행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언론보도를 신뢰하고 싶다. 우리 언론이 정말 믿을 만한지 여부를 떠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초래할 혼란이 더욱 걱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에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종종 터지곤 한다. 단순한 오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기자가 사람인 이상, 어떤 면에서 오보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법에서도 모든 오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허위보도라도 기자가 진실이라 믿었고 그 믿은 데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면책된다. 단순오보를 넘어서는 오보, 단지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은 아니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오보가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사건을 대할 때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에도 솔직히 화가 난다.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분노이지 싶다. 동시에, 걱정이 앞선다. 언론보도조차 믿

을 수 없게 된 마당에 앞으로는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나.

이번 호에서 다루고자 하는 판결은 지난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속칭 ‘찐빵 소녀’ 사건(2012나28808)이다. 재판을 통해 밝혀진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 위법의 정도는 심각하다. 법정에서 드러난 방송의 민낯은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진실을 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하게 된다. 특히, 언론에 의한 사실왜곡의 정도가 심각할 때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언론보도가 진실해야 할 이유와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SBS <긴급출동 SOS 24> 당시 방송된 화면 일부
(출처 : 미디어오늘, SBS '찐빵소녀' 방송조작,
피해자에 3억 배상 확정, 2013년 2월 4일자)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SBS 프로그램 <긴급출동 SOS 24>에서는 3회에 걸쳐 ‘찐빵 파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어느 국도 주변 휴게소 종업원이 모진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첫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찐빵 소녀를 동정하는 글과 함께 휴게소 주인을 엄벌하라는 분노에 찬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 결과, 휴게소 여주인이었던 A는 구속기소되었으며 A의 나머지 가족(남편, 딸)에 대한 수사도 개시되었다. 불쌍한 찐빵 소녀는 가족의 동의 하에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악당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약자는 구제받았으니 말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찐빵 소녀’가 사라져가고 있을 무렵, A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고작 벌금 100만 원이었다. 온 가족이 찐빵 소녀를 감금하고 칼·재떨이 등을 이용해 장기간 구타했다는 방송 내용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 이유인즉, 방송에 보도된 내용 대부분을 법원은 사실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 ‘찐빵 소녀’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가해자들보다 엄중한 형사처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에 이른다. 여기서도 법원은 찐빵 소녀가 A와 그 가족들을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보았다.

방송에 연루된 경찰관들의 책임도 인

정되었다. 법원은 A 등이 수사 받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직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재판은 이제 이 사건 방송 제작진의 책임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2012년 2월 23일 A 1억 5천, A의 남편 6천, A의 딸 9천 도합 3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SBS에게 선고했다(2010가합23150). 고액의 위자료로 인해 이 판결은 다수의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이 사건 방송은 …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외형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에게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방송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작진이 사실을 취재하여 이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여 제작한 방송이 아니라 피고 제작진이 이미 원고들을 가해자로 ○○○을 피해자로 단정한 다음 피고 제작진이 미리 구상한 줄거리 즉 ‘원고들의 ○○○에 대한 폭력행사를 고발하고, ○○○을 폭력적 상황에서 구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에 맞추어 취재 및 촬영을 한 다음 편집을 하여 만들어진 허구의 사실에 불과하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원·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월 11일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서 내린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당사자들의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언론사에 패소판결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우선, 언론사가 패소한 이유다. 명예훼손소송에서 언론사가 패소하는 이유는 대체로 보도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입증하지 못해서다. 언론보도와 관련해 송사가 걸리면 주로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보도의 공익성이 부정되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

언론보도의 공익성이 부정되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일이다. 보도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언론사는 성실히 취재에 임했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면책받을 수 있다. 보도의 상당성이 보도의 진실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런데 면책의 필수요건인 보도의 공익성은 다른 것으로 보완될 수 없다. 공익성의 결여는 곧 법적 책임으로 직결된다.

또한, 공익성의 결여는 그 자체로 언론의 심각한 위기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언론이 하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면 이런 믿음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보도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부터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보도의 진실성 이전에 공익성마저 부정한 이유는 “제작진이 미리 구상한 줄거리에 맞추어 취재·촬영 및 편집”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80쪽이 넘는 판결문 중 상당 부분이 방송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할애되었다. 편집이 아무리 언론사의 권한이라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편집이라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3억에 달하는 위자료 인용액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법원에서 인용한 언론사건 평균 인용액이 2,700만원 정도(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액이다. 이 점을 재판부도 의식했는지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이 매우 길고 자세하다. 여기서도 거듭 반복되는 단어는 ‘만들어 놓은 결론’, ‘고의’, ‘왜곡’ 등이다.

믿음과 신뢰,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쉽다. ‘언론이 하면 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정도의 신뢰를 얻는다면 아마 취재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며 공익성마저 부정하는 행동이다. 우리 언론이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리라, 난 믿는다.